

임예진 관세법(2025년 대비) 개정사항 (3)

- 관세법 2025. 3. 14. 개정 [시행 2025. 3. 14.]
- 관세법 시행규칙 2025. 3. 21. 개정 [시행 2025. 3. 21.]

* 공지사항

※ 관세법 법률이 3월 14일에 한 번 더 개정되었습니다.
(법 제89조 제6항, 법 제264조의2)

※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중에서 제출서식 등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p.110 첫 번째 박스 : 규칙 제9조의3 수정

◆ [규칙 제9조의3]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5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연 1천분의 35	연 1천분의 31

p.309 첫 번째 박스 : 규칙 제9조의3 수정

영 제56조 제2항 관련 시행규칙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규칙 제9조의3]

영 제56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31를 말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연 1천분의 35	연 1천분의 31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의 이율이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개정되어, 보정이자 이율, 과다환급액에 대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율, 관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1천분의 31로 수정하셔야 합니다.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이율(연 1천분의12)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p.264 표 : 규칙 제48조 제3항 표 수정 (술 면세한도 개정)

구분	면세한도		비고	
술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담배	궐련		200개비	둘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한다.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 0 밀 리 리 터 (ml)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		250그램	
향수	100밀리리터(ml)			

개정 전	개정 후
2병 /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ℓ)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용량 2리터(L)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p.276 : 법 제89조 제6항 ① 표 수정

-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4의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대상 물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 감면에 관하여는 다음 표의 기간 동안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분의 100	100분의 80	100분의 60	100분의 40	100분의 20

p.504 두 번째 박스 : 규칙 제68조의2 제1항 표 수정

제1항. 특허수수료 (원칙)

법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수수료(이하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라 한다)는 규칙 제68조(특허수수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의 특허수수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해당 연도 매출액	특허수수료율
2천억원 이하	해당 연도 매출액의 1만분의 5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억원+(2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25)
1조원 초과	21억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

p.575 : 규칙 제76조의2 신설 (법 제232조의2 제1항 밑에 추가)

법 제232조의2 제1항 관련 시행규칙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등 [규칙 제76조의2]

제1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

법 제232조의2 제1항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자
- ②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10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위탁받은 자

제2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 기간

법 제232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과실·착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출물품 선적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세부사항 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p.645 : 법 제264조의2 ⑦ 수정 (2024년 12월 31일 개정된 부분이 다시 개정/괄호삭제)

⑦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전	개정 후
⑦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	⑦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p.707 두 번째 박스 : 규칙 제81조 제목 및 제1항 수정

업무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의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제81조]

제1항. 업무시간의 수수료

법 제3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시간의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구호용 물품의 경우 당해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기본수수료 4천원(휴일은 1만2천원)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절차 또는 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개정시간	업무시간